

광주지방법원 2015. 8. 11 선고 2015가단50569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16. 10. 12 선고 2015나56365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5. 8. 11 선고 2015가단505699 판결

전문

원고 A

피고 B

변론종결 2015. 7. 14.

판결선고 2015. 8. 11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
경량철골조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약 2430㎡를 철거하고,

나.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,

다. 2015. 1. 1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철거 및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739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세황

별지